

第232回国會  
(臨時會)

#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7月25日(木)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전용학 의원 대표발의)(계속)
2.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3.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화중 의원 발의)(계속)
4.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5.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대안)
6.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계속)
7.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발의)(계속)
8.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김화중 의원 발의)(계속)
9.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대안)
10.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11.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12.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
1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계속)
15.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계속)
16. 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中改正法律案(계속)
17.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中改正法律案(계속)
18.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계속)
19. 공청회개최의견
  - 가.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
  - 나. 유아교육법안
  - 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20. 업무현황보고
  - 가. 교육인적자원부

## 審査된案件

1.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전용학 의원 대표발의)(전용학·원유철·이강래·김근태·이희규·이재정·이근진·김화중·임종석·김경천·설훈·이인제·남궁석·홍재형·김덕규·설송웅·송석찬·김효석·이용삼·이성현·이종걸·원철희 의원 발의)(계속) ..... 3
2.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이창복·조배숙·임종석·김덕규·강운태·전용학·김홍일·강신성일·설훈·김정숙·이훈평·이미경·김운용·안동선·이양희·유재건·임인배·전갑길·김화중·김영진·이재정·정대철·장성원·최명현 의원 발의)(계속) ..... 3
3.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화중 의원 외 28인 발의)(계속) ..... 3
4.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3

5.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대안) .....	3
6.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고홍길·권철현·권오을·김경천·김무성·김형오·신경식·엄호성·이상희·이성현·이재오·임종석·원철희·윤한도·정병국·정형근·조웅규·현승일·현경대·황승민 의원 발의)(계속) .....	4
7.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외 27인 발의)(계속) .....	4
8.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김화중 의원 외 28인 발의)(계속) .....	4
9.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대안) .....	4
10.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박용호·배기운·최용규·김희선·조희욱·이종걸·김성순·이미경·송영길·안영근·문희상·김근태·김덕규·이창복·김성호·신기남·유재건·임종석·김원웅·김태홍·조정무·정동영·심재권·설훈·전용학·김화중·김경천·이호웅·유삼남·송석찬·김민석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	4
11.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인봉 의원 외 34인 발의)(계속) .....	4
12.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강현욱·김기춘·김문수·김영진·김용학·김찬우·문석호·박승국·박시균·박용호·박재욱·박희태·손태인·신경식·신영국·신현태·원유철·원철희·윤두환·윤철상·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인기·장성원·장정언·전용학·정장선·정창화·정철기·주진우·최선영·함석재·허태열·현승일 의원 발의)(계속) .....	4
1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김만제·안경률·김기배·박혁규·이성현·서청원·박종희·강인섭·정인봉·정병국·심규철·김문수·이방호·손태인·최연희·윤경식·황우여·조정무·이인기·전재희·이윤성 의원 발의)(계속) .....	4
1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4
15.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4
16. 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4
17.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4
18.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정부 제출)(계속) .....	4
20. 업무현황보고 .....	21
가. 교육인적자원부 .....	21

(10시31분 개의)

○**委員長 尹榮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丘冀盛**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尹榮卓**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번 회의 때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權哲賢** 위원님 인사 좀 해주시지요.

○**權哲賢 委員** **權哲賢** 위원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 배속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들을 계속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당 내부에서 제가 당직을 맡고 바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자주 못나올 것 같아서

지금 저를 축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발추문제 등 몇 개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잘 해결해 주시면 마음 가볍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在五**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李在五 委員** 신임 위원장님을 모시고 전과 여일하게 교육인적자원부와 잘 협조해서 좋은 교육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국회사무처 인사 때 우리 위원회 일부 입법조사관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陳善禧** 입법조사관입니다.

**尹光植**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저는 10여년 동안의 의정활동 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도 없고 또한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통의 학부모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느끼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들을 보면 철학이라고 할까, 원칙이랄까, 일관성 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기대수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채 학교와 선생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혼란과 불신을 증가시켜 왔다는 것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에 7명의 교육부장관이 교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교육정책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쉽사리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학교붕괴, 공교육 위기 등 심각한 사항이 전개되고 또한 교육정책이 경제논리에 밀려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는 우려할 만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근간이 바로 서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국교육의 확고한 기틀을 세우고 또한 교육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푸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여러분!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한층 고조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업무수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개혁을 두려워하고 현상유지에 대충 만족해서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교육의 앞날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서 산적한 교육현안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소신과 용기를 보일 때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나아가 우리 교육의 미래는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李美卿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말씀 해주시지요.

○李美卿 委員 李美卿 위원입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배정받아서 왔습니다. 처음 일하는 만큼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높은 열정과 에너지로 교육에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의 교육정책이 잘 못 따라가고 있었던 측면도 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맞는 교육정책을 잘 펴나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또 같이 정책을 만들고 하는 일에 미력을 보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이겠습니까마는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의부터 먼저 처리하고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전용학 의원 대표발의)(전용학·원유철·이강래·김근태·이희규·이재정·이근진·김화중·임종석·김경천·설훈·이인제·남궁석·홍재형·김덕규·설송웅·송석찬·김효석·이용삼·이성현·이종걸·원철희 의원 발의)(계속)
2.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이창복·조배숙·임종석·김덕규·강운태·전용학·김홍일·강신성일·설훈·김정숙·이훈평·이미경·김운용·안동선·이양희·유재건·임인배·전갑길·김화중·김영진·이재정·정대철·장성원·최명헌 의원 발의)(계속)
3.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김화중 의원 외 28인 발의)(계속)
4.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5.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대안)

6.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황우여·고홍길·권철현·권오을·김경천·김무성·김형오·신경식·엄호성·이상희·이성현·이재오·임종석·원철희·윤한도·정병국·정형근·조용규·현승일·현경대·황승민 의원 발의)(계속)
7.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외 27인 발의)(계속)
8.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김화중 의원 외 28인 발의)(계속)
9.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대안)
10.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이재정·박용호·배기운·최용규·김희선·조희욱·이종걸·김성순·이미경·송영길·안영근·문희상·김근태·김덕규·이창복·김성호·신기남·유재건·임종석·김원웅·김태홍·조정무·정동영·심재권·설훈·전용학·김화중·김경천·이호웅·유삼남·송석찬·김민석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11.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인봉 의원 외 34인 발의)(계속)
12.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案(권오을 의원 대표 발의)(권오을·강현욱·김기춘·김문수·김영진·김용학·김찬우·문석호·박승국·박시균·박용호·박재욱·박희태·손태인·신경식·신영국·신현태·원유철·원철희·윤두환·윤철상·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상배·이인기·장성원·장정언·전용학·정장선·정창화·정철기·주진우·최선영·함석재·허태열·현승일 의원 발의)(계속)
1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이재오·김만제·안경률·김기배·박혁규·이성현·서청원·박종희·강인섭·정인봉·정병국·심규철·김문수·이방호·손태인·최연희·윤경식·황우여·조정무·이인기·전재희·이윤성 의원 발의)(계속)
1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15.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16. 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17.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18.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정부 제출)(계속)

(10시40분)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田溶鶴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까지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18건의 법률안 중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16건의 법률안 외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2건의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법률안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玄勝一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이상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玄勝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玄勝一 위원입니다.

제232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의원발의 법률안 22건과 정부제출 법률안 6건 등 총 2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하신 주요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총 28건의 법률안 중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4건과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는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각각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李在禎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 鄭寅鳳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좀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花中 의원 외 28인, 田溶鶴 의원 등 22인, 金敬天 의원 등 25인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된 4건의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위원회가 동 법안들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주요내용은 첫째 초등학교 및 중

학교의 취학의무연령을 산정함에 있어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하거나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여 취학연령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년수를 취학의무연령에 가산하도록 하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둘째 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학생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개념상 범위가 넓은 보건교사로 변경하며,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넷째,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 교과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전공한 자도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유치원, 초·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도 일정한 조건하에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양호교사의 상담관련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호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도 일정한 조건하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李揆澤 의원 외 27인, 金花中 의원 외 28인과 黃祐呂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3건의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위원회가 동 법안들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안으로 제안하는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감염성폐기물의 이동 처리에 따른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및 정서적인 건강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적용배제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3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鄭寅鳳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이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2004년까지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안의 개정실익이 없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李在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이 유아대상학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에게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유아대상학원 원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같이 하셨으나 이러한 내용은 법체계상 이 법안에서 다루어질 성격이 아니고 李在禎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안 제정 시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權五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내용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WTO협정 위반 등 통상마찰의 실마리를 제공할 소지가 있고 법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대국민 캠페인이나 행정지도 등으로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수정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在禎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인학교에 국내법에 의한 교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외국인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고 하는 개정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례규정의 조문배치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이미 경과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사로 하여금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용휴직대상기관을 국내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대상기관의 확대 문제는 교원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동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이미 경과한 부칙의 시행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은 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환경 및 산업인력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수업연한 단축기간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이미 경과한 법안의 시행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들은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의 해임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인적자원개발회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각 부처의 추진실적평가 등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 법안의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었

는데 그 주요내용은, 첫째 이 법안의 핵심용어인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둘째 인적자원개발의 주체들에게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시책·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으며 수립된 계획은 일반국민에게 공개토록 하였고, 셋째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사항 중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때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여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그밖에 체계·자구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한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법률안, 유아교육법안 및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이들 3건의 제정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曹雄奎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들 법안을 소위원회에 계류시켜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玄勝一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위원이신 金貞淑 위원님, 金花中 위원님, 田溶鶴 위원님 그리고 李在禎 위원님!

많은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듣기 전에 李揆澤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임되어 오셨으므로 먼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揆澤 委員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후반기에 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말씀하고 싶은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達 위원 말씀하세요.

○朴昌達 委員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 玄勝一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제9조제2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교사로 하여금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2항의 법조문의 성격은 분명히 강제규정입니다.

현재 양호교사의 배치근거와 관련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로 초등학교에서는 18학급 이상에 한해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18학급 미만의 학교는 양호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양호교사들이 순회교사 형태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양호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가 모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4월을 기준으로 양호교사 확보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법정배치기준을 모두 채우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법정배치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중학교의 양호교사 확보율은 40.7%이고 고등학교는 51.7%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법령상 당연히 두도록 되어 있는 교원의 법정확보율마저 89.6%입니다.

보건교육은 교육과정상의 교과목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통일교육, 성교육 등의 범교과학습 교육사항으로 담임교사, 관련 교과 지도교사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고 체육교과목 내에도 보건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상황을 보면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양호 겸직교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보건교육은 대체로 교과내용과 관련이 있는 체육, 가정, 생물선

생님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양호교사가 보건교육을 혼자 담당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만약 학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나 양호실을 찾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순수 간호개념의 기본적인 업무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둘째,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가 중·고등학교의 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각급 학교에 양호교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현장의 상황이 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이 좀 보완될 때까지는 한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거나 후속조치가 함께 검토되면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黃祐呂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 委員 朴昌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대안) 제9조제1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래 놓고 제2항에는 “학교의 장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포한 날부터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보건교사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학교보건관리 중에는 영양관리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영양사들의 주된 직역이고 또 학교에는 영양관리를 위해서 영양사들이 거의 대부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교사로 하여금 이러한 지도를 하도록 할 때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과 보건교사와의 상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영양관리 부분은 영양사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한 것인지, 그리고 현 실정이 어떤지에 대해

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李美卿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美卿 委員**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 첫 번째 주요내용에서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이동 처리에 따른 2차 감염예방을 위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잘 협의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해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냥 그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강화해온 내용들이 법안과 자칫 충돌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金貞淑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貞淑 委員** 발의자이신 金花中 의원님께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양호교사가 보건교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역할도 바뀌는 것입니까? 지금 黃祐呂 위원님께서 영양사들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보건교사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으시는데 저는 영양사들의 역할은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답변 좀 주십시오.

○**黃祐呂 委員** 본 위원의 질의를 정리하면 지금 보건교사에 영양사가 포함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에서의 영양관리 부분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들이 주관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보면 영양관리 부분이 보건교사 임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9조1항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학교의 장은 영양관리 등에 필요한 지도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질병치료·예방, 약물남용예방, 체위향상 이런 부분은 보건교사의 영역으로 명확한데 영양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교사의 영역과 영양사와의 관련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사의 직무영역에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내용이 포함되고 영양관리 까지도 넣을 때에는 영양사들 직역과의 경계라고 그럴까 직역 분담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 점에 대해 논의를 했느냐라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鄭夢準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夢準 委員** 제가 오늘 회의시간에 늦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어서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李相周 부총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답변을 하시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소위원님들이 추가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법안심사에는 차관이 즉 참석했기 때문에 차관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榮卓** 차관님 답변하시기 전에 金花中 의원이 발의하셨으니깐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金花中 議員** 金花中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위원님과 법안심사 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朴昌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호교사의 충원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렇게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두면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충원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법을 보시면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에 보건교사로 하여금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학생의 건강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 보건교사가 소규모인 경우도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건강관리를 하다가 보건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 이것을 꼭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면 의무적으로 하지만 현재처럼 보건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두고 있으면 학생이 건강관리실에 왔을 때 지도하는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양호교사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黃祐呂 위원님께서 보건교사가 영양사의 영양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9조를 보시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지 이것을 보건교사가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체육교사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도 있고 영양관리를 위해서 영양사가 하게 할 수도 있고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교의가 하게 할 수도 있고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학교약사가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조의 학생의 보건관리 내용을 보건교사가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9조2항에 학교의 장은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보건교사로 하여금 공중보건에 필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 좀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와의 역할 갈등은 현재 이 법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李在五 委員 金花中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 9조2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의 기본적인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교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양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학교의 장이 관련교사로 하여금 정

기적이고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항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건교사만 하게 되어 있고 보건교사가 없는 데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법안이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항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학교장에 따라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해도 되는 것이고 보건교사가 없으면 체육교사가 하는 것이고 체육교사가 없으면 영양사가 하는 것이고 생물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관련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보건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넣어 놓음으로 인해서 마치 기본적인 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아니면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우려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든지 조정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李在禎 委員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제9조를 다룰 때 제1항에 학교장이 가지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보건에 관한 지도의 책임을 규정했고 이 규정에 의해서 학교의 장은 아마 성실하게 학생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2항을 신설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건교사라는 교사의 역할을 적어도 학교 내에서 분명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보건을 지도하는 책임을 규정하자는 뜻에 있었고 이런 의도의 배경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도 앞으로 가급적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가령 순회교사라든가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시행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특별히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다른 교사들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지금 李在五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장 책임 하에 체육교사나 다른 분야의 교사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9조의 2항을 신설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학생들의 보건과 건강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 아래 이 법조문을 넣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榮卓 朴昌達 위원 말씀해 주세요.

○**朴昌達 委員** 그 말의 뜻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양호교사라는 것이 제가 무지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 사건·사고에 대한 대비입니다. 물론 시간이 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도 시키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순회교육을 시키고 또 이 양호교사가 보건교사가 되어서 강의를 하게 된다면 만약의 응급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보건교사가 꼭 필요하다면 교육부에서 아마 각 학교에 배치를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李在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커리큘럼의 내용은 체육교사나 생물선생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항에 강제규정을 두지 말고 조금 더 근본취지를 살려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우발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대비니까…… 일을 잘 하다가도 1년에 한두 번만 큰 사고 나면 그 학교는 굉장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잘 생각해서 굳이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두지 말고 전처럼 학교의 장에 맡겨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黃祐呂 위원 말씀해 주세요.

○**黃祐呂 委員** 이것이 심도 있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고 생각은 됩시다마는 조문체계를 보면 9조에 ‘학생의 보건관리’라고 망라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1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해서 보건 전반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2항에는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보건교사만 시키라는 제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9조1항은 학교장으로서 전반적인 보건에 관한 교육을 또 지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속항으로 제2항에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을 보건교사만 하도록 한정함으로써 그동안 체육교사, 영양사 또는 교육 관계 여러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통합 집중됨으로써 과연 보건교사에게 이러한 보건관리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학교의 현실은 어떻고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고 또 현재 맡고 있는 담당을 다 재배치할 때 일어나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

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항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金貞淑 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貞淑 委員** 법은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도 안 되지만 지금 교육의 교과과정이 전부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양호교사를 다 두게 되어 있는데 안 두고, 그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예요. 농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파도 도시에 있는 아이들만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것은 정말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9조에 영양관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보건관리 측면에서의 영양관리를 보건교사가 한다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적인 차원의 영양관리 정도이지 이 분들이 영양학적으로 무엇을 연구해 가지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벼운 의미의 영양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 하나만 살짝 빼든지 아니면 2항의 ‘보건교사로 하여금’에서 보건교사라는 단어만 하나 빼면 학교장이 보건교사를 시키든지 체육교사를 시키든지 그때의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2항 전체를 다 빼버리면 보건교육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건교육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최악의 경우나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성희롱이나 폭행, 동네에 나가서 놀다가 당한다든지 이런 예방교육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질병예방 차원에서……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과목에, 이것도 아마 교육부는 들어보나마나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교과과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고 저는 2항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 마음에 걸리시면 보건교사라는 말만 살짝 빼고 통과를 시켜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委員長 尹榮卓** 李在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李在五 委員** 다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법을 편의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9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이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치료 및 예방, 약물 남용의 예방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항에 나오는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의 내용입니다.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이 1항에서 말하는 영양관리, 질병 치료 및 예방, 약물 남용의 예방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2항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1항에서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서 보건교사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보건교사의 임무를 특정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체육교사도 할 수 있고 영양사도 할 수 있고 생물선생도 할 수 있고 영어선생도 할 수 있고 외부의 강사나 보건소 직원을 데려와서 그때그때 학교형편에 따라서 학교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2항을 넣지 않고 1항만 해도 법의 목적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항을 넣어둠으로써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보건교사 이외에는 못 하는 것으로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2항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의 조문이 겹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委員長 尹榮卓 金貞淑 위원 말씀해 주세요.

○金貞淑 委員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건교사가 되었던 양호교사가 되었던 정규 교과과정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다. 교사자가 붙으려면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teaching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할 일을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업무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건교사로 하여금’이라는 말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전교생이 한 학기에 1시간씩이라도 듣도록 커리큘럼을 빨리 개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정규과정이 아니라서 안 하고 넘어가니까, 안 하고 넘어갈까봐 강화시켜놓은 의미밖에 없는데 너무 이것을 확대해석하고 신경을 예민하고 세밀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 보건교사라는 말만 빼면 안 됩니까?

○李在五 委員 그것은 이해하지요.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편의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상호간에 의견조율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발의하신 金花中 의원님의 말씀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教育人的資源部次官 金信福 교육인적자원부차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양호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학교환경위생 유지 관리, 건강진단 실시, 응급환자 등 학생들 처치 이런 것도 있지만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에 보건교육’ 이런 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9조제1항이 학교장은 이런 항목들을 위해서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9조제1항이 전적으로 보건교사의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영양관리와 학생 체위향상이 있는데 학생 체위향상은 체육교사가 분담할 수 있고 영양관리는 영양사가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제9조제1항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9조제2항에 “학교의 장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金花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데는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건교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에 전부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과화해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라는 말을 빼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제2항처럼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하겠고 또 여의치 않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순회교사를 두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9조제2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빼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건법시행령의 양호교사의 직무에도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9조제2항이 꼭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이 법안을 발의하신 金花中 의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金花中 議員**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입장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 옳으신 말씀들입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의료를 완전히 공공으로 해서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서 유병률을 낮추어 줌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가 기업인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0년도부터 학교보건을 전공하면서 우리 국민이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책임은 교육계에서 갖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력 중 양호교사 즉 보건교사가 가장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 사람들이 보건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도 한 60% 정도는 ‘보건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건교육을 굳이 하지 않아도 건강관리실에서 학생들 상담만 해도 얼마든지 봉급 받으면서 자기 일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아이들이 스스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은 자기 의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병이 나고 병이 난 것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또 못 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어디에선가는 끊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교육계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9조제1항과 제2항이 상충되거나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만이라도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지름길을 만들어 보려고 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문구상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제 기본 의지와 철학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현재 보건교사가 6000여 명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만이라고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학생들의 유병률이 낮아져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을 좀 헤아려 주시고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임무를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李在禎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在禎 委員**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인적자원부차관께서도 역시 정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보건교사의 역할과 학교 내에서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金花中 의원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교사에 대한 문제는 보건교사의 역할과 임무, 학교 내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세분화해서 다른 방향에서 법제화를 하도록 하고 金花中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는 제9조제2항을 빼고 나머지 법안을 일괄해서 통과시키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의를 해 봅니다.

오늘 金花中 의원님의 말씀은 속기록에 다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전체가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에는 약간 토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수정 제의를 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아마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金花中 의원님의 철학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었고 李在禎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였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정도로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金花中 議員**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할 것이고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능력개발을 위해서 어떤 조치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믿고 보건교사의 직무를 더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학교보건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李美卿 委員** 보건의료법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기는 받았습시다라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李美卿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차관님을 대신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美卿 위원님께서 환경부와 협의를 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협의를 했고 이 법안은 현재 의료기관 내에 있는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료도……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6개소 중 15개소에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15개소 중 12개소는 소각시설이고 3개소는 멸균분쇄시설입니다.

참고로 감염성폐기물 관리업자가 2000년 8월 9일 이전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소관이었습니다. 2000년 8월 9일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처리되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15개소는 대학 내에 이러한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대학의 부속시설로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다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에 오히려 감염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李美卿 委員** 제가 이 법 개정이 환경부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는 설명을 들었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문제제기를 해서 계속 질의 회신이 오고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환경부가 이 법안을 왜 제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국민 보건환경, 감염 우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환경부가 보다 신중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866개 병원들 중 15개소에서 이러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적출물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경우에 2차 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생깁니다. 이것은 15개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

는 경우에도 그것을 허락해 줄 것인지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논리가 맞다면 모든 병원에 이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더 권장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개 시설 중 12개가 소각이고 3개가 멸균분쇄라고 했습니다. 저는 멸균분쇄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또 모든 병원이 먼저 멸균분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멸균분쇄한 그 폐기물들을 다시 소각시설이나 매립지로 옮겨가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개소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병원들의 소각로 관리가 거의 엉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소각을 하고 있는 이 시설들을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균분쇄시설을 갖춘 곳을 그냥 두었다면 제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각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되고 그 자체가 여기서 말했던 감염성폐기물이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위원장님, 지금 뒤에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서 5개 국립대학교병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尹榮卓** 李美卿 위원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지요.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님, 말씀하시지요.

○**서울大學校病院長 朴容眩** 서울대학교병원장 박용현입니다.

지금 李美卿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소각장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었고 멸균분쇄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도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 고가인데다 멸균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고 법에서 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학교병원들과 마찬가지로

로 전량 전문업체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들이 전부 시내중심가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허용해 주신다면 아마 나름대로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주사기 같은 것을 부수어서 소독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소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허용해 주신다고 해도 아마 병원에서…… 현재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도 기이 투자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옳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美卿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들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와 주택가 내에 이런 소각장, 그것도 소형소각장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이것을 기이 투자했던 것이다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법에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허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전문처리업체에게 맡겨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는 환경부의 요청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외규정을 두어 개정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발의하신 黃祐呂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黃祐呂 議員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시급하게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당 간사로서 제가 위임을 받아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새로운 것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종전과 같은 예를 유지하는 법으로 이 규정을 정비하는 입법입니다.

그래서 소각으로 허용할 것인지 멸균분쇄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소각을 우리나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환경부나 위생당국에서도 소각에 대한

규제를 소각의 형태나 방법상의 규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각에 의한 폐기물처리를 허용하고 있고 또 현재 당장 이것을 멸균분쇄식으로 하라든지 또는 제3의 장소에 수거해서 하라든지라는 것이 대안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럴 경우에는 이동과정에서 있어서 사실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환경 위생당국의 입장이고 또 지금 멸균분쇄식으로 당장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소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법을 바꾸는 바람에 당장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다른 대안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당국에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에 이러한 것에 대한 협의가 죽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지금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밀하게 0%의 완전성을 기하고 공해유발도 막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에서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국고보조와 여러가지 이것을 위한 입법 또는 행정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에서도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을 용인하고 게시는 것이지 이것이 최상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바 아닙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논의해 주시면 제안의원으로서는 논의에 따르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넘겨온 내용 그리고 정부 간에 협의해서 내놓은 내용 중에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이동처리에 대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2차 감염을 예방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멸균분쇄기를 들여 놓았어도 아직 그것의 효용성을 완전히 100% 입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까 우선은 전문 수거업체한테 위탁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2차 감염을 막는 방법에 오히려 더 접근하는 길입니다.

이 안에 법의 예외조항을 두어서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 환경과 보건 이런 것을 걱정한다고 하면 이 안에 소각장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문제 때문에 이것을 두었고 그동안에는 법의 저축을 안 받았는데 이제 당장 법의 저축을 받게 되니까 생겨난 문제다 이것을 솔직하

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였느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의 예외조항을 적용받는 대상은 15개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15개 병원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엄중한 울타리를 쳐놓은 법에 예외조항을 둘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이 울타리를 15개 병원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예외조항을 허물어 버린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소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산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틀렸고 그것을 전체 법안에 다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黃祐呂 의원 더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黃祐呂 議員** 지금 현실적으로는 15개 병원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관계법규 정비차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 왔던 것이고 지금 특히 환경분야에 오래 종사하시고 또 많은 좋은 관심과 입법을 보여 오신 李美卿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차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시간과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가를 감안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적극 찬성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마는 당장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장이나 누군가로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在五 委員**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金貞淑 委員** 예.

○**李在五 委員** 그러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도 이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것이지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李美卿 委員** 이것을 고쳐놓으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李在五 委員**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조직, 인체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 감염성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15개소의 시설은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던 적출물처리시설로서는 인정이 되어 오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8월 9일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감염성폐기물로 바뀜에 따라서 그 시설 안에서 현재까지는 인정이 되어 오던 것이 법률이 바뀌므로 해서 인정이 안 되도록 바뀌니까 현재와 같이 지금까지의 시설물에 한해서만은 인정을 해 줌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동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를 없애고 그 다음에 李美卿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는 당장 이러한 해당시설에서 그런 고가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의 시설에 대해서만 이것을 인정해 주자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아까 서울대학병원장님 말씀대로 보다 더 선진적이고 위생적으로 병원을 관리하고 또 지금 가장 국민의 관심이 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으로 병원관리를 하는 곳에서는 이미 이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던 과거의 법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미비하고 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맡겨 놓고 그대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술하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느 환자가 썼던 주사기인지도 알 수 없는 주사기들이 소각되어서 그 상태 그 물골

그대로 나와 있고 유산된 태아들의 여러 가지 적출물 등 온갖 종류의 것들이, 상당히 큰 소각로 같으면 아주 고열에서 소각이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작은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제대로 소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소각해 가지고 다시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함께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졌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이런 적출물들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온에서 다시 소각되거나 또 어떤 것은 아주 중한 유해물질매립지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입법을 하지 않았고 또 우리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해 온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환경부로 넘어갔던 것인데 환경부가 무엇에 의해서 다시 예외조항으로 해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까지도 허용한 마당에 다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서 뭔가를 해제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근거로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李在五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李在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李在五 委員** 지금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급하게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합시다.

○**委員長 尹榮卓** 먼저 소위원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小委員長 玄勝一** 李美卿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래식 화장실을 없애고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불법이라는 사태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세식 화장실을 마련할 때까지는 재래식 화장실을 계속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만들어서 다른 법의 개

정으로 인해서 못 쓰게 되는 것을 우선 쓰게 하고 李美卿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법률개정안을 내서 다루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개정안대로 통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美卿 委員** 저는 반대인데요, 지금 수세식 화장실을 예를 드셨는데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면 며칠 걸리지요. 그 기간을 제가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 1년이 걸린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만 잡힌다면…… 그냥 지금 소각시설로 하면 30만 원이 드는데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t당 60만 원이 듭니다.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5개 해당되는 이 병원들이 그동안에 뭐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한다면 저는 1년 정도의 예외조항을 둘 수는 있다, 양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이 조항을 이런 상태로 열어 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처리하겠다면 가부투표로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위원회 첫 회의에 가부투표를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인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우리가 이해하고 또 양해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으로서 투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李美卿 위원님이 여태까지 환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일을 해 오셨고 또 우리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학교당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나 꼭 같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문제는 바로 예산이 아니냐, 돈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열어놓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이 불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나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상당히 오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웬만하면 李美卿 위원님이 조금 이해하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우리가 마련해 가지요.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李在禎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李在禎 委員 사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편법으로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용인하더라도 일단 이 법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것인데 지금 李美卿 위원님께서 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일단 대안과 나머지 의원 발의한 안을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돌려서 재심의하고 재상정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소위원장……

○小委員長 玄勝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된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지금 손질을 안 해 놓으면 당장 불법화가 되어 버립니다. 준비가 안된 그 15개 병원이 바로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익은 못줄망정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사태는 피하자 해서 이것이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리 속에 두고서 합법화를 시켜주고 추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방향으로 장차 법률개정안을 내면 안 되겠나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다시 돌아가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단 범법자가 되는 것은 피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榮卓 黃祐呂 의원님……

○黃祐呂 議員 이 법의 취지가 지금 소각이나, 하기가 분쇄멸균법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문제이고 또 현재 보건당국이나 환경당국이 이 소각법 자체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넣는다면 우리 위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각시설과 멸균분쇄법을 허용하고 있는데 학교정화구역에서는 이것을 좀 더 강도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

다. 그러나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지만 제3의 소각시설로 이전하는 방법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관리업체에 따라서는 그것을 빼돌리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들이 하고 있던 것을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부 불법시하고 당장 바꾸라고 하는 데 대해서 보건당국이나 환경당국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양보해 달라,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각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다시 규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과 시설을 투입해서 규제도 필요없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소각로나 분쇄멸균법 자체가 아직 위험성이 있지만 그런 현재의 위험성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허용입법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은 보건당국이나 환경당국이 학교시설 주변에서는 더 엄정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더 좋은, 완전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학교정화구역부터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감하지만 지금 소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사실 이 법안을 검토할 때에 환경당국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자와도 ‘이 법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지금 소위원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표결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의 전통에 따라서 합의통과를 시키시고 다만 존경하는 李美卿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행정지도로써,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법개정안을 정비하면서 학교정화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법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환경부 그리고 보건당국의 3부처가 이 점에 대한 행정협의를 즉각 해 주시기를 결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尹榮卓 李在禎 위원 말씀하세요.

○李在禎 委員 법안을 심사한 법안심사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새천년민주당의 간사로서 당내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못한 것도 제가 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본 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장시간

논의가 된 적도 사실 없었는데 이런 활발한 의견이 개진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李美卿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홀히 해서 논의를 안 한 채 넘어온 것도 아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점을 검토하고 이 문제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의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사실 제가 아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부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16대 국회 들어와서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또 그런 예외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李美卿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부칙제2항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유효기간도 李美卿 위원님께서 1년을 말씀하시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니까 2년 정도의 유효기간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 임기 내에서는 이 문제를 일단 유보하고 다음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다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두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조치로써 이것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는 이런 정도로 합의해서 오늘 이 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칙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항(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부칙조항을 넣어서 이것으로 받아주시지요.

○**委員長 尹榮卓** 李美卿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하시지요. 앞으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해야 되는데 李在禎 여당 간사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위원회의 권위를 지켜 주어야 될 입장이고 또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되면 앞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단서규정을 두고 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바로 1년 내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한 것을 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로 해놓고 또 李美卿 위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은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이 위원회에 처음 와서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 문제가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것이 잘 확보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음에 이런 법안이 또 올라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이면 16대는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2003년 12월까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때까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2004년 12월까지 가면 바로 또 불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학교당국도 그렇고 병원당국도 그렇고 또 우리도 바로 지금부터 어떤 법 개정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04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손을 놓고 이것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습니까?

○**李美卿 委員** 제가 너무 제 고집만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부총리께 하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법에 유예조항을 두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때에 가서 또 유예기간을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대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를 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부총리께서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5개 병원을 위시한 이러한 병원들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시하고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래서 그러한 지시를 어떻게 했

는가 하는 것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委員長 尹榮卓 李美卿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田溶鶴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제2항 金敬天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金花中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黃祐呂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李揆澤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金花中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대안) 내용 중 제9조제2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李美卿 위원이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부칙 제2항에 “(유효기간)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2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그간에 충분한 준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李在禎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鄭寅鳳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權五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李在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인적자

원개발기본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하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소위원회는 물론 전체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축조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나름대로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 바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청회는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가 이미 상세하게 축조심사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만큼 전체회의에서는 수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적자원의 개념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신설하고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적자원개발 주체들에게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시책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적극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4조의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수립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수립된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

한 규정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 제6조에서 공공기관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7조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조 제6항에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안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안 제9조 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의 투자분석, 안 제10조 인적자원개발정책 책임관의 지정, 안 제11조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 4개 조문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바꾸고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때 국무총리 승인규정을 삭제하여 지정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협력망 구축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포함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1항 시행일, 제2항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는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美卿 委員 교육감 선거는 언제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시·도마다 다릅니다.

○李美卿 委員 그러면 올해는 곧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올해는 지난 교육위원 선거할 때 함께 했습니다.

7월에 있었던 교육위원 선거 때 경북교육감 선거는 했고 또 다른 시·도 선거가 다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李美卿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중개정법률안을 정부가 8월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제안되어 있습니까?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8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李美卿 委員 알겠습니다.

교육감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제출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榮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순서를 바꾸어 의사일정 제20항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20. 업무현황보고

### 가. 교육인적자원부

(15시01분)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상주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존경하는尹榮卓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대 후반기 국회가 구성된 후 오늘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

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 교육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늘 충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尹榮卓 위원장님 그리고李美卿 위원님,鄭夢準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로 교육위원에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부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교육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 제고, 사교육비 경감,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 등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당면과제인 세계적 지식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여러 가지 교육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주요 교육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신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우리 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첫째로 초·중등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들이 믿고 함께 가꾸어나가는 학교상 구현을 통해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 제2단계 교육정보화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학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하고 고급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을 자율화·특성화하고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원천지식의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두뇌한국(BK)21사업, 기초학문 보호·육성, 지방대학 육성과 아울러 대학별 학생선발 방법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협력과 참여하에 효율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능력중심의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기회 확대와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마련과 함께 실업계 고교 내실화·특성화 및 평생학습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회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입법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 8개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법안은 원활한 학교 운영과 강력한 교육정책의 추진 그리고 학교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입법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부 간부와 소속기관장, 그리고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信福 차관입니다.

李基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鄭冀五 인적자원정책국장입니다.

趙成鍾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徐南洙 대학지원국장입니다.

金撤 공보관입니다.

金洪鎭 감사관입니다.

金正基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입니다.

朴景載 교원정책심의관입니다.

金東玉 비서실장입니다.

李鍾洹 총무과장입니다.

李英萬 학교정책기획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鄭永宣 학술원 사무국장입니다.

李成茂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鄭相煥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董善浩 국제교육진흥원장입니다.

朴慶淑 국립특수교육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그다음으로는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丁海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장입니다.

金麗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趙宣濟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입니다.

金相權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李鍾旭 한국학술진흥재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원장은 공식이고 사무총장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참석 중에 있기 때문에 기초실장이 나왔습니다.

金炯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위원입니다.

여기도 사무총장이 현재 외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徐世鉉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車炫直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金榮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다음은 국립대학교병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朴容暎 서울대학교병원장입니다.

全琇漢 경북대학교병원장입니다.

黃泰周 전남대학교병원장입니다.

梁雄錫 부산대학교병원장입니다.

李俊揆 충남대학교병원장입니다.

(국립대학교병원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 이기우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정부입법계획 순으로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차관,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 해서 정원이 모두 447명입니다. 직속기관은 5개이며 국립학교 103개교, 시·도교육청 16개, 지역교육청 180개, 산하단체가 20개입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이 180개입니다라는 일반 기초자치단체 수는 23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육청이 2개 내지 3개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주요업무계획, 예산, 조직 및 정원, 법령에 관한 사항을, 학교정책실은 초·중등학교정책, 교과용 도서, 교원종합정책을, 인적자원정책국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을, 평생직업교육국은 평생교육종합계획, 학원, 직업교육, 전문대학을, 대학지원국은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기본정책, 학술연구·진흥정책을, 교육자치지원국은 지방교육자치제도정책, 지방교육재정, 유아·특수교육의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직속기관 정원은 국립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립학교 합하여 37만 210명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해서 1만 9124개 학교에 1195만 1270명의 학생, 45만 3101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육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예산은 22조 2783억 5800만 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보다 3.2%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수치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라는 2002년 정부예산은 111조 9767억 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2002년 교육예산 22조 2783억 원은 정부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DP대비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시·도전입금 등을 합치는 경우에 28조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제7차교육과정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창의력과 탐구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교사중심의 획일적 지식전수 위주에서 학생활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10년간 운영하고 교육내용을 6차 때보다 감

축하고 또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계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교육내용 재구성 운영권을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는 초등학교는 5, 6학년까지,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는 현재 1학년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04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7차교육과정 추진을 위해서 먼저 교원정원을 올해 1만 1000명 늘리고 내년에는 1만 2600명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고 고등학교는 올해까지 초·중학교는 내년까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또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중앙요원의 워크숍 또 교육과정업무담당자 연수, 시·도방문설명회도 이미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연수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에 의한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모형 개발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 기본교육 충실과 창의력 및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지난 3월 19일에 공교육내실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대책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라는 사항을 반영해서 모두 5개 영역에 66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에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연합 고등학생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에듀넷 사이버 교육서비스 강화 및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2001년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한 수상자에 대해서 EBS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무 및 전산보조원으로 보조인력 753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는 휴업일수 자율결정제도 활용 등을 통해서 학사운영방안을 만들어서 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또 교수-학습 개선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운영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올바른 학생문화 정립을 위한 학교공동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5년까지 매년 7000억 원씩 3조 5000억을 투입해서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장 실태 점검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는 발굴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 학급당 학생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학급 증설계획은 작년 7월에 수립해서 6057학급 증설에 필요한 4791억 원을 교부해서 지난 3월 새 학기를 맞아 4814학급을 증설 편성함으로써 36명 이상 과밀학급의 비율이 작년도 77.5%에서 올해에는 21%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도 작년 39.7명에서 올해는 33.9명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초·중학교 학급증설계획도 지난 3월에 수립해서 6247학급 증설을 위해서 3059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 한편 학교신설사업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202개교를 추진하고 올해는 219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학교 신설비를 올 9월에 250개교에 대해 2조 7000억을 배정할 계획이고 초·중학교 교실증축사업은 작년도 고등학교 증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거울삼아 올해는 부총리께서 특단을 내려서 동절기 전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교직원발전종합방안 추진입니다.

교원의 근무의욕 활성화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6일에 교직원발전종합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2대 기본방향으로 해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32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교원 존중 풍토조성을 위해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을 작년도 702억 원에서 올해는 800억 원으로 늘리고 또 올해의 스승상을 제정하는 등 우수교사를 발굴하고 수범사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책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을 운영하고 또 교육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 교원과의 대화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교원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교원업무 보조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10월부터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봉급 수준으로 현실화하면서 교원에 대한 학급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종합복지카드제를 도입해서 올 5월 말 현재 26만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 장기 해외 유학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부담 완화를 위해서 또 근무평정요소의 구체화 등을 위해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지난 6월 25일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 실적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입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현행 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설한 사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책정 등 학사, 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이에 따른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25일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를 5개 교를 지정하고 올해 시범운영하는 학교를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3개 교로 내년의 시범학교로는 해운대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등 모두 5개 고등학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시범학교에 대한 학생모집은 작년 11월과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3월 25일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고 시도교육청의 건의를 받아서 지

난 5월 28일에 전북교육청에서 추천한 전주 상산 고등학교를 내년도 시범학교로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운영하게 된 학교의 학생모집도 차질없이 올 11월과 12월에 실시하고 또 올해 실시하고 있는 시범학교에 대해서도 평가를 10월과 12월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정책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분야별 재능에 걸맞는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도 영재교육 시행계획을 지난 4월 10일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9일에는 영재교육에 관한 국가적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재교육관련법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을 지난 4월 18일에 제정 공포하고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영재교육진흥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으로 부산과학고등학교를 지난 5월에 지정해서 내년 3월 1일에 개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은 2002년 하반기 영재학급 134개 반, 영재교육원 67개 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재교육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2002년도에 영재교육 담당 교원에 대해서 1, 2차로 28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수립기획단을 구성하고 실무작업팀을 구성해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9월에는 영재교육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기타 교수학습자료라든지 판별도구등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교육 발전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농어민의 이농증가와 도시인구집중 및 학생수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지난 3월 14일에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도 농어촌 학교현장을 방문하시고 여기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한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부에 설치된 농

어촌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농어촌학교에 대한 실태파악과 자료수집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열망하고 있는 농어촌 교직원 사택지원계획수립입니다.

지난 5월 23일에 교육부총리께서 단안을 내려서 올해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4892호에 대해서 약 122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차로 1084호에 대해서 300억 원의 지원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원 채용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명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교대출신의 경우에 15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농어촌에 가는 경우에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 중간보고서를 지난 6월 27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직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이 내용을 협의를 해서 올 10월 말까지는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을 최종 작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교육정보화사업입니다.

2000년 말 완료한 모든 초·중등학교에 대한 컴퓨터보급, 인터넷 연결 등 물적 기반구축 중심의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추진과제로는 국민 PC활용능력개발지원 등 모두 10대 영역에서 34개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이 2000년 12월 31일에 완료가 됨으로 해서 물적기반 구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2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을 작년 5월 30일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정보화사업추진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7, 8월 중에는 시행하도록 하고 아울러 대학정보화종합발전방안도 같이 8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모든 교육 행정기관과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무, 학사, 인사, 재정 등 전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개발대상은 모두 27개 단위업무입니다. 교무, 학사, 인사, 재정 등을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올 10월 20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52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10월에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고 또 개발사업자 선정 및 사업도 착수했습니다. 사업전담자로서는 삼성 SDS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과 시도에 실무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업무분석 설계를 완료하면서 시스템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7월과 8월에 실시하고 올 10월에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개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및 한국 바로 알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李美卿 委員 정보화 예산 중에서 20쪽을 보면 매년 일정액을 정보화에 투자하는데 2001년에 4500억 원이고 2002년에 3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지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李美卿 委員 그런데 5쪽의 분야별 세출예산에 보면 교육정보화 추진에서 2001년에 748억이고 2002년이 738억으로 되어서 유독 교육정보화 추진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여기 20쪽에 나타나 있는 매년 일정액으로 작년에 4500억, 2002년에 300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까지 기반구축에 소요가 많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李美卿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교육정보화 추진 그 항목이 아닌 다른 데에서 빼온 것입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지금 저희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22조 3000억입니다. 교육재정은 28조입니다. 이 속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가지고 2조 2000억이 순수하게 늘었습니다. 그 돈으로 감당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것은 국고로서 지원되는 액수이고 여기에서 투자하는 액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李美卿 委員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지금 2단계 교육정보화사업으로 2002년에 30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지방재정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지출한 것이 2002년에 738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억 원하고 738억 원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저는 교육정보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분야별 세출예산에서 보면 이 부분만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좀 상세하게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고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분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차액이 생깁니다. 상세한 말씀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구용역에 10억 원, 민간단체지원에 9억 3000만 원, 운영비로 7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5일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대책과 관련해서 오류시정 활동 및 각종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유럽·중국의 교과서 시정·조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해외 한국학 관련기관과의 사업협의 및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하면서 외국 교과서 관계자를 초청하고 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일본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시정자료를 올 12월에 개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전체회의를 올 10월에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분과위원회는 2개월마다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뇌한국21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고등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 육성, 대학원 시설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총 1조 4000억 원을 매년 2000억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두뇌한국21사업 공고 및 참여사업단 선정을 99년 6월 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완료하고 두뇌한국21사업에 대한 평가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9월과 2001년 10월에 실시했는데 그 박스 속에 들어있는 바와 같이 주요성과를 잠시 보시면 과학기술분야 SCI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사업 시작 전보다 시작된 후에 21%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인문사회분야 국제 및 전국학술지 게재 실적은 92%나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두뇌한국21사업의 중간평가를 지난 2월부터 8월 31일 일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제도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현장정착을 위한 합리적 대입전형방법을 마련하고 대학별 학생선발방법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여 입학제 및 고교등급제 시행 금지 등은 학교교육정상화 등을 위해서 최소전형기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 출제체제 개선 등 안정적 시행·관리를 위해서 평가원 내에 이미 상시 수능시험 출제전담 지원기구를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34명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수능모의평가도 실시하고 출제시에는 교사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보완 및 시행을 위해서 수시 1학기 학생모집 전형을 지난 7월 15일부

터 8월 20일 사이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입학전형 실시는 수시 2학기는 9월에, 정시는 12월 14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6일에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의 대학입학전형계획 기본계획 수립은 8월 중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학년도부터 실시될 대학입학 학생부·수능 반영계획에 대해서는 대교협에서 8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입니다.

지방대학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지방대학의 역할을 모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추진상황에 보면 지방대학육성을 위한특별법을 정부에서 추진하였었다는 관계부처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유보한 상태에 있었었다는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대학의 자생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별 자체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 학생 및 교수 유치를 위한 교육·연구여건도 개선하도록 해서 기숙사 수용률을 작년도 9.5%에서 2005년에는 20%가 되도록 하고 올해에는 368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방대학 교수에 대한 연구비도 올해 예산으로 4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문 보호·육성대책 수립·추진입니다.

기초학문 보호·육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올해 1월 23일에 기초학문 육성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지난 5월 8일에는 기초학문 육성사업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결과선정 결과를 8월 중으로 발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발전을 선도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학문수준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탁월한 교육·연구능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외국대학원의 교육내용, 운영기법 등이 국내에 용이하게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는 일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포함해서 외국대학원 설립유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내 우수대학원 중에서 연계 희망대학원을 조사하였습니다. 또 담당국장인 대학지원국장이 싱가포르의 운영사례를 현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올 7월 16일에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내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사람과 지식을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역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교육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이 기본계획의 토대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모두 4대 영역, 16개 분야, 119개 정책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국민 기초역량 강화에 5개 분야,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에 5개 분야,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의 고도화를 위해서 3개 분야, 국가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참여해서 계획안을 수립한 후 공청회를 거쳐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119개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목표, 추진방안, 추진일정 등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지난 1월 25일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21개 정부부처 과장급 198명을 책임관으로 지명하고 또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16개 분야 중에서 국가전략분야인력양성 등 7개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은 이번에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분야 등 나머지 9개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방안 수립입니다.

최근의 청소년 이공계 기피현상에 적극 대처하

고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우수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2일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방안, 이공계 대학교육의 내실화 방안, 사회진출 이후의 비전제시-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추진을 위한 부처별 후속조치계획을 8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병역특례제도 개선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인간 양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기반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 마을·도시를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해서 작년에 3개 시·군·구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평생학습 종합정보망도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대한 지원도 지난 3월에 9억 4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는 고령인적자원장기발전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고 또 소외계층 지원대상 25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난 6월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직 퇴직자의 자원봉사를 위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평생학습 3개 마을·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교육 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해 16개 대학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개편 및 내실화·특성화 추진입니다.

실업계 고교의 체제개편 및 내실화·특성화를 통해서 첨단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초급 기술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개편에 175억 원을 지원해서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를 운영하고 통합형 고교도 운영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산업체 연수도 실시하고 특성화 고

등학교 개편도 지원하였습니다. 또 첨단학과로 개편하기 위해서 60개 학과에 8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특성화를 위해서는 333억 원을 지원하여 기자재 확충 및 노후 기자재를 대체하도록 하면서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 우수학생 유치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교육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험실습기자재를 2005년까지 75%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은 2001년에 15%밖에 감면하지 않던 것을 2002년에 20%, 2003년에 25%로 해서 2004년에는 30%까지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입법계획은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포함해서 모두 11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 委員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상세한 보고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또 오늘은 아주 의의가 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이 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교육인적자원부로서는 큰 발전을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다 와 계시는데 앞으로 남은 우리 일정에 산하단체와 국립대학교병원의 보고를 별도로 받고 질의하고 토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속기관까지만 계시고 산하단체와 국립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은 우리 위원회가 허락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방금 李在禎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제의하신 대로 받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접 관련이 없으신 분은 가서 불일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金貞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淑 委員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상임위가 열려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을 죽 보면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한 또는 졸속한, 아주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각종 교육정책들이 계속 남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또 학생들, 학부모들을 절망속으로 밀어 넣고 이제는 교육 때문에 이민이라도 가야 되겠다는 실망감이 온국민에게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학부모의 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몇 년 동안 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크게 화도 냈지만…… 우리 아들도 망해서, 길게 봐서는 망했다고 할 수 없을 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우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교육전문가가 오셔서 좋아지는가보다 하고 기대했었는데 노력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지는 징후는 아직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6월 26일에 초·중·고교생 체벌조건 등을 담은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디테일해서 반대효과를 낼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학교생활규정이 ‘학교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극단적인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교사들, 학생들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교총에서도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또 이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 교사 등 다각도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도 밝혀 주시고 의견수렴을 하셨다면 어떤 절차로 하셨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만든 학교생활규정이라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부총리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정부 들어서 많은 장관들에 의해서 즉흥적이고 또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발표되었다가 실천도 못하고 사라져버린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촌지교사 신고제, 참스승 인증제, 담임교사 선택제 이런 것들이 발표되었다가 실시도 못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단 1년도, 한 달도 못하는 이런 교육정책을 수립했다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이 참 큰일인데 교육부총리께서 생각하실 때 현 정부의 교육철학 그러니까 金大中 정부의 교육철학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기도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해놓으신 일을 평가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교육정책을 펴신 일에 대해서 그 공과를 한번 평가해 보고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우리 부총리께서 그 공과를 평가해 주시고 마무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선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에 교육위원을 선거해서 146명이 선출되었는데 참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많은 부정부패사태들, 선거법위반사태들이 고발되었다고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현직교장,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자기 사람을 심는다거나 줄서기 이런 관행을 계속해서 서울의 경우를 보면 전·현직 교육계 인사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직 교육청 직원들을 각급학교 운영위원으로 만들어 놨다는 의혹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인단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이사람들을 뽑으라는 권리를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현재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거하는 이 제도가 타

당한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래 학운위를 만들었던 그 당시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학부모들 또 학부모단체랄지 교사단체랄지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휘둘리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제도에 기대하는바 성과를 제대로 못 거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현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사교과서 검정관련인데 지난 6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까지 국정도서만 사용이 인정되어 온 국어, 국사, 도덕과목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검정도서 사용을 허가하겠다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서의 1종, 2종 구분을 없애는 대신에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키로 하고 또 주교재와 보완교재의 구분을 폐지해서 음반이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전자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방침과 관련하여 국사교과서 검정제도가 타당한지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발간한 책이 있는데 책명은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사이에 역사적 관점이나 내용이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해 온 국정교과서와 다르게 만약에 이 책이 교과서로 채택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이 책에 기술된 내용이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에 기초하고 있고 일부 현대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국어, 국사, 도덕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는 것을 혹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자들의 주장처럼 국사교과서

가 역사 유물론에 바탕하여 기술되었다고 할 때 교과서 검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된 이 책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발간한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역사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사교과서를 검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편찬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교실을 막 짓고 2월 말까지 다 마무리 짓는다고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6월 말까지도 완공되지 않고 있는 학교가 64학교에 494개 교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실증축의 부진 또 무리하게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 맞추면서 교실이 부족하니까 과학실습실 등을 교실로 전용하면서 실습을 하지 못하는 등 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7차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6차 교육과정하고 달리 과학과목의 경우는 실험실습과 탐구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론 수업만으로는 교육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평가도 이에 맞추어서 실험과정 등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서술형이 권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7차 교육과정의 너무 무리하고 졸속적인 운영은 삼가해 달라,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실이 부족하니까 계속 교실 짓고 소음 내고 먼지 내고 수업과행되고 좌우간 정부 교육당국으로 인해서 교육이 실효를 못 거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되어 왔는데 부총리께서 이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 지금 교육받고 있는 애들도 중요한 애들입니다. 이 시기에 교육을 망쳐버리면, 이미 지난 4년 동안 교육받은 애들은 굉장히 손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입시제도만 해도 말도 못하게…… 바로 우리

집 아이입니다. 졸속적인 제도 때문에 희생된 아이들을 어디서 누가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수업을 피해 본 아이들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다른 문제는 다 보충해 줄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다 커버리고 교육시기가 지나요. 교육시기 지난 아이들, 잘못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증명할 길도 없지만 증명하라면 할 수 있어요. 몇 십가지의 증거를 저는 재작년부터 계속 대고 있으니 사례로 나타나 있는 결과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총리께서 교육전문가이시니까 7차 교육과정의 무리하고 졸속적인 진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육적인 부작용, 학생들의 고통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수가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책을 받거나 제재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7차 교육과정이 내년에 2학년 가고 내후년에 3학년 가는데 내년부터 선택과목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준비상황은 아까 이기우 실장께서 자세히 말씀하시던데 구체적으로 교사는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으며 시설은 어떻게 가고 있고 예산은 얼마만큼 더 투입해서 차질이 없게 잘 실시하겠다는 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학신입생 부족사태, 지방대학 붕괴위기 아까 보고에서도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진작부터 준비를 해 왔어야 됩니다.

내년에 가면 4년제와 전문대를 합친 총 신입생 입학정원이 대학교 수능응시자보다도 7만 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4년제 및 전문대의 입학정원이 올해만 해도 각각 38만, 35만 해서 73만 명인데 수능응시자는 67만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노력을 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이런 추진계획을 갖고는 지방대학 다 넘어가고 죽습니다. 금년에도 70%도 못 채우는 학교가 30여개 그리고 미충원 인원이 2001년의 세배가 넘는 2만 3000명 전문대학도 작년보다 5배가 넘는 2만 2000명인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대학의 생존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이 하나 붕괴되면 지역사회의 황폐화까지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재정적인 면을 포함한 모든 부분

에서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부총리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나머지 이공계대학 우수인재 유출관련 또 기타 특기적성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선거에 당적을 2년 내로 가진 사람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무자격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분 그러니까 대위원도 되고 직능이 중앙당 부위원장 이런 분이 입후보를 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분이 나모 씨인데 이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드릴 테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이분말고도 또 입후보를 했다가 당적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뛰었거든요. 이런 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이 선거의 혼탁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셨고 특히 무자격자가 입후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禎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 委員 새천년민주당 李在禎입니다.

먼저 이상주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진력해 오시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金貞淑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金貞淑 위원과는 견해를 달리 하면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원활동이 아주 큰 결실을 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얼마 전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학급 환경이 달라진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달라진 환경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함께 배명중학교에 가서 '1일 교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학급당 인원수가 35명 이하로 줄고 학급분위기가 과거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또 학생들로부터도 직접 그런 느낌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교육여건 개선 정책이 이제 비로소 결실을 내고 큰 효과를 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여건

개선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결실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명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강의시간을 특활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의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3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평준화지역이 72년 서울·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도에서 이루어져 왔고 현재 중소도시들 가운데 역시 평준화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경주, 포항, 안동, 여수, 순천, 목포, 정읍 이렇게 7개 지역이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에서의 상대적 불리를 피하고 원거리 통학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평준화지역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한편에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31개의 자율학교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에 특성화 학교로서 특목고라든지 대안학교 등으로 61개의 학교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형태와 그리고 평준화지역이 갖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9.2%가 평준화 유지·확대에 찬성했고 그리고 고양이나 부천 등 7개 도시의 여론조사 결과는 약 70%가 평준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KEDI에서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학력테스트를 한 결과 평준화지역의 학생들 가운데 97년도 1학년 학생이 99년도에 3학년이 되었을 때 점수로 38점이 상승되었고 비평준화지역은 35점이 상승했으며, 평준화지역이 평균 267.86점인데 반해서 비평준화지역이 252.51점으로 평준화지역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통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 결국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하위권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정책적으로 펴나가며 실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하위권과 하위권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평준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약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어떻게 기울이고 교육의 효과를 어떻

게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27개국을 포함한 32개국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를 국제 비교한 결과 한국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읽기부분에서는 6위, 수학에서는 2위, 과학에서는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읽기영역의 최상위 수준인 5단계에 도달한 한국학생의 비율은 5.7%로서 뉴질랜드의 19%, 핀란드와 호주의 18% 등에 비해서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 비교에서도 한국은 읽기가 20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런 국제경쟁에 있어서 우리의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더 우수하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평준화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 내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학벌사회로 지칭되고 있는 한국적 특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변화 없이 평준화교육의 성공적인 달성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열화와 과열 입시경쟁을 최소화하고 과도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사교육 실태를 보면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결과 초등학교 70.7%, 중학교 59.5%, 고등학생의 35.6%가 과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 71%가 과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교평준화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교평준화교육의 중심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이 평준화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가 무엇인가? 둘째로 사회변화, 특히 학벌중심 사회를 탈피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현재의 조치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중장기 정책이 있다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역 간의 교육격차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의 보고에서도 지방대학 육성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4년 동안 어떤 정책을 펴왔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 학교현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해온 조치는 무엇이며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 평준화와 함께 현장학교의 자율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제까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체계 아래에서는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해도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정책 속에서만이 교육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학교단위의 책임경영제 또는 학교단위의 책임교육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의 어떤 지시와 감독, 규제, 제한 이런 속에 있지 말고 정말 자발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교육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자율성을 학교로 대폭 이관할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에서 붉은 악마를 비롯한 시민들의 서울시청 앞이나 여러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응원과 열기는 대단했었습니다. 저도 한 두어 차례 시청 앞에 나가서 그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만일 정부가 이 일에 개입했다면 이 응원의 열기가 아마 이렇게 안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어떻게 하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동기를 유발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른 문제는 다른 분들이 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일반대학원 석사정원은 1990년 1만 9656명에서 2000년에는 3만 8176명으로 194%가 증원되었고 일반대학원 박사정원도 10년 동안에 과거 4743명에서 1만 1737명으로 247% 증가해서 양적으로 엄청난 증가를 했습니다. 학과수도 10년 전 2676개 학과 또는 전공이 개설되었지만 이것이 10년 동안에 근 2배로 늘어났고 특수전문대

학원의 경우는 5배나 증가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양적으로 엄청난 증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의 현실은 대학원의 겸임교원을 포함해서 교수채용이 불과 58.9%, 교수 1인당 학생수가 무려 33.6명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대학원교육이 중등교육보다도 못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대학원의 환경을 볼 때 국내에 있는 대학원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 때문에 더 긴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국대학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에 앞서 국내대학원의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국내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강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외국대학원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외국대학원으로서의 편중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지방대학대학원이 고사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럴 때 지방대학대학원이라든가 기타 엄청나게 양적으로 증가해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원의 앞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정원미달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대학원의 경우 태부족인 전임교수, 열악한 교육환경, 박사출신의 고급실업자의 증가,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조차도 얻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외국대학원 유치가 대학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문제를 유발할 때 그 대처방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자립형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玄勝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勝一 委員 이상주 부총리 취임 이래 우리 교육계가 안돈되어 가고 있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마침 이 두가지 문제를 金貞淑 위원과 李在禎 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적인 질의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학운위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학운위라는 것은 각 학교에서 학부모나 교사, 주민들이 학교운영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교장의 전횡이나 이런 사태를 막고 개선하자는 소위 학원민주화 바람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의도된 계획이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운위가 생기고 난 후에 슬그머니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학운위 위원에게 넘겨주는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학운위가 단순히 당해 학교의 학사에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기관화 되는 현상을 보였고 이것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으로 대표되는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행정기관입니다. 이 국가행정기관의 장들을 국민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학운위 위원들이 뽑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그러므로 학운위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현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소수의 유권자가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는 가장 타락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소수가 투표할 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인데 우리가 지난 7월 11일에 실시한 교육위원선거에서도 각종 불법·탈법선거시비로 인해서 당선무효 등 심각한 선거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의 경우에 당선이 무효로 될 경우 차점자가 승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고소·고발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위원 선출제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여론이 이미 비등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李在禎 위원

께서도 언급하셨습니까마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7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국회가 상시 개설되고 있지 않은 현 체제하에서 '왜 국회에 안 알려주었느냐'고 말하기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이러한 주요정책을 사전에 예고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느닷없이 외부에다 발표해 버리고 계획을 거의 확정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잘못된 부분, 부족한 점은 없는지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가령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공식적인 차원에서라도 국회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알려서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다면 아마 국회로서는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가 우리나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일말의 우려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尹榮卓 위원장, 李在禎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가 외국대학원을 유치하겠다고 할 때는 이러한 우수대학원을 한국 교육현장에 갖다 놓음으로써 한국 대학원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와 경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우수대학원들은 한국의 교육을 위해 봉사·헌신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수익성을 따질 것이고 또 그 수익성이 한국의 교육신장보다는 더 관심이 가는 요소이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의 우수대학원은 학비만 연간 약 3만 불입니다. 그것은 우리 돈으로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3만 불에 걸맞는 교육내용을 한국에다 줄 수 있겠는가 또 그런 대학원이 생겼을 때 우리 한국 학생들이 3000만 원을 내고 그 대학원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점을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비싸다고 해서 그 비용을 줄이고 교육내용 자체를 낮추어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그것이 한국 교육에 무슨 도움을 가져오겠느냐 이것입니다. 외국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과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할 학점 이런 것을 깎아줘서……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가령 대학원 프

로그램을 1년 6개월로 해 준다든지 교육과정 그 자체를 낮춰준다면 우리나라 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설비요건라든지 교실확보율, 운동장 확보율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진출하기 쉽게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육내용 그 자체를 깎아줘 버리면 결국 한국 대학원과의 경쟁에서 불공정거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대학원에게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실질적으로는 한국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는 점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이 계획을 확정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 그 기본철학은 무엇인지, 외국의 우수대학원이 들어오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禎 玄勝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花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花中 委員 새천년민주당 金花中 위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상주 부총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었고 첫 번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를 지난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의 활동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발상의 전환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0여년 동안 교육 일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을 하면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또 각 부처 간의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 간에 조정이 잘 될 것이고 좋은 인력들을 배출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부처 간 이

건조정이라든가 또 그것을 통한 새로운 인력개발이나 발전방향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이 두 가지는 서로 달리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하는 부처로 승격되었고 부총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방안 수립이나 실업계 고교 내실화, 전문대 육성방안, 지방대학 육성방안 등은 서로 연계해서 대책을 수립해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방안들 또 많은 문제들이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에서도 서로 조정이 안 돼서 각각 대책을 내놓은 보고서를 접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서로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업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전문대나 지방대학의 우수 이공계학과를 육성하여 산업발전체계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연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총리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 내 각 부서 간의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어떻게 연계해서 인력개발을 하려고 하시는데 대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의료부분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나 지방대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 학교 출신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및 국제경쟁력이 높은 학과들을 전문대나 지방대학에 증·신설해야 하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등 보건의료전문직에 관련된 학과들은 국제경쟁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 세계시장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전문직의 교육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의학교육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건의료전문인력의 국내에서의 수요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거나 국내 시장에서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인력이 대접 받을 수 있는 교육수준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교육도 물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한의학 교육도 우수국립대학에서 교육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학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아주 발전된 의학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수국립대학에서 교육되어져서 좀더 수준높게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하고 특히 간호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 학사학위 간호사가 아니면 취업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취업의 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 있고 이는 단순히 교육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제 간호교육을 4년제 학사학위 간호교육으로 일원화시켜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년제 간호대학으로 일원화할 경우에 서울보다는 지방국립대학의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확대개편해서 지방의 많은 여성들이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간호학을 전공하거나 또 미술이나 국문학 등 각종 학문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이 간호학을 복수전공하도록 해서 국제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육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의학 교육이 우수 국립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또 그러한 부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년제 간호교육을 4년제 학사학위교육으로 일원화해야 하고 지방국립대학의 간호학과를 단과대학으로 확대개편해서 지방대학의 여학생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아마 일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이견조율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총리 체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에 걸맞는 조정역할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잘 해 주시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인력들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육성되어 취업의 길을 넓혀 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 추진관련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내실화대책 보고를 살펴보면 점점 현실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는 그나마 방과후 교육활동강화와 학원의 심야교습단속이라는 대책도 있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보충수업의 재현이 불가피하고 학원의 실태를 무시한 단속의 효율성도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는 현실적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민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취임 이후 현장을 많이 탐방하시고 현실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일대 학원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시험점수에 의한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여러 줄 세우기의 전형을 권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선학교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서울대 입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아이들은 입시학원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일 우수하다는 학생들이 민족사관고등학교 반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이는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해외 유명대학에 많이 합격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특목고 합격률이 높은 중학교 근처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사를 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유명 학원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농어촌 주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시골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있겠는지, 이렇게 부자지역은 여유있는 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가난한 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빚을 내서라도 고향을 버리고 강남을 찾아, 대도시를 찾아

학원가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방안과 관련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라는 사항을 반영한 5개 영역 66개 과제의 제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합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학교 교육과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에 대한 관련입니다.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농어촌지역의 교육황폐화를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 기회, 교육시설, 교육환경의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방안의 근본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에서 밝혔듯이 권역별 교원과의 대화, 현장방문과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농어촌 교육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 학생수의 감소 그로 인한 학교운영의 어려움, 이어지는 학부모들의 불신이라는 고리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순환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던 것들이며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던 내용을 어떻게 실효성있게 법제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인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직원 사택지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1220억 원으로 신축 1300호, 개축 680호, 보수 2912호 등의 지원계획을 밝혔

는데 올해 소요재원 300억 원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과 후년에 필요한 920억 원의 재원은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에 근거하여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이 제정되고 예산확보하고 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어촌 문제는 비단 교육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농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더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부 업무보고에서도 농촌의 교육여건개선이 농촌 활력의 출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도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련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을 잘 조율해서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현재 타부처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유기적인 공조를 하고 계시는지 또한 농어촌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논의가 보고서에 있습니다.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2년 전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해서 교원 병역특례제를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교원 병역특례제는 전혀 없고 이공계 사람들의 병역특례만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우수교원 확보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병역특례를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중에 교원 병역특례제도 같이 통과시켜서 좋은 교원을 확보하여 농어촌교육에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在禎 金花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昌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達 委員 한나라당 朴昌達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2년도 제16대 국회 후반기 첫 교육위원회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소매치기범을 뒤쫓다가 교통사고로 고대에 재학 중인 고 장세환 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 장세환 군의 그 높은 의기는 참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반성하는 바가 큼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 장세환 군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표합니다.

고 장세환 군의 그 의로운 넋을 추모하기 위해 각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는 이상주 교육부총리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고 장세환 군이 고대 재학 신분이었고 의로운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수장이신 이상주 부총리께서 조문에 참석하신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의로운 죽음 앞에서 조문하며 고인이 남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어떻게 해서 죽음의 진상이 조사도, 발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조문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미군 장갑차에 압사 당한 두 여학생에 대한 사건진상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추모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 교육현장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9일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 남쪽 3마일 해상에서 남북한 해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서 우리 해군 4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정규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손실을 입는 참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4강 진출로 한반도가 붉은 물결로 넘실거릴 때 우리의 아들, 젊은 군인들이 적함으로부터 피격을 당해서 서해바다 역시 붉게 물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결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전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고 북한은 수시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창졸간에 접한 뉴스 속보를 접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른바 햇볕정책이라 명명된 대북정책을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의 이런 기습도발과 관련해서 우리의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 시에 국가위기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의 불안 해소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해교전 사태 이후 전국 일선학교 및 특히 연평도 부근 서해 5도의 섬마을 학교에서는 서해교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니 인터넷 평화학교가 운영 중에 있고 2001년 10월 6일 공개자료실 1646번에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이라는 정부시책교육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이라는 정부시책교육이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사이트에 등재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부총리께서 부임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 11쪽의 중간 부분에 “우리 군은 6·25 이후 최초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무력으로 응징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무력도발을 못 하도록 도발의지를 꺾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의 서해상 무력도발을 무엇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할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정부 들어와서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린 일이 없고 당하고도 가만히 있던 적은 없음” 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남북관계 대화일지를 검토한 결과 1998년 6월 22일 강원도 속초 해상에 무장간첩 9명이 동해 침투 중 어망에 걸려 표류하다가 군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고, 동년 11월 20일에도 강화도 부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이 침투하였으나 해군의 추격을 따돌리고 북으로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서해교전까지 총 5회의 잠수정 침투 및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부시책교육 자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들어가며 그 잘못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편람 229페이지를 보면 통일대비 교육정책 수립 등 통일교육 관련 업무는 인적자원정책국의 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인사직원이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페이지에 등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전담부서가 아닌 타 부서의 직원이 담당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기술되었어도 이를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곧 부총리의 행정부처 장악력이 없는 것인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이것도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온라인 여론조사기관인 P&P리서치에 의뢰해서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난달 5월 21일부터 전국의 중고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서 34.9%가 내용이 지루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생들 스스로의 관심부족을 꼽은 것도 35.6%에 이르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통일교육 관련내용에 대해서 과반수인 58.4%가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일교육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용이 지루하고 어렵고 또한 유익하지 않다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교육을 장차 민주시민으로서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한 통일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총리의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在禎 간사, 尹榮卓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간제 교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어두운 부분에 대학교의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마저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가 늘어나 교육의 안정적인 면을 해치고 선생님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계약 시 방학 중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불리한 조건으로 교사들을 채용하고 방학이

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좌절감을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왔는데 선생님들의 다양한 신분이 더욱 많아지는 지금의 처우가 과연 교직종합발전방안과는 무관한 부분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방학 중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금을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기피하는 것은 방학기간이 빠질 경우 계약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해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정규 교사 66명에 25명의 교사를 시간 강사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가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 학생의 인성적인 면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강사 선생님을 그렇게 많이 써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인 유대 속에 인성 교육까지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朴昌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美卿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美卿 委員 李美卿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거나 자료요청을 하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에 있어서의 정보화 추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교에 정보화 교육시간이 어떻게 배정되고 있는지, 또 대학입학 시에 정보화 능력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여 나간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왜 35명이냐? 36명이야 짜이 있게 되는 것인데 애초부터 35명으로 해서 짜이 없는 학생을 만들어 놓는 것은 생각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서 7차 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장학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9종 108만 부

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명에게 어떻게 보급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8월에 나오는 교육과정 적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정보화 우수사례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수한 정보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채용을 위해서 교육대학에서 정보화를 입시에서부터 필수로 하고 졸업을 할 때에 여기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는 경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朴昌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학 동안에도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셨는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의 교육과정 개편을 완료하고 사범대는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화의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교육과정 개편 완료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정보화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서 사람과 지식을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역량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성교육과 지식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이라고 했을 경우 그 뒤에 제시된 4개 분야의 과제에서는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식분야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인성교육 또는 사람에 관한 교육 부분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번에 교육 위원 선출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1차로 어떤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야심차게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특기와 적성교육, 창의력 교육을 중심으로 한 7차 교육과정 추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안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대비 반강제 보충수업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골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떤 파악을 하고 계신지?

최근 어느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90% 이상이 보충수업에 참가하고 있고 또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방학 중 160시간의 보충수업 실시계획을 세운 학교도 있고 또 공립학교는 전부, 사립학교는 50% 정도가 강제성이 있는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또 상당수 학교들이 야간자율학습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인천지역 고등학교의 55%가 0교시 보충수업을 위해 7시 30분 전에 등교토록 하고 있다. 그다음에 보충수업비로 10만 원 내지 30만 원까지 걷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보충수업,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입시위주의 학교풍토 이것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7차 교육과정 추진, 특기·적성 위주의 교육과 박자가 맞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반 강제적인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국에서 파악한 각급학교들의 특기·적성교육 실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어서 우선 시범운영을 해 가면서 확대하기도 하고 고쳐나가기도 해야 될 문제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

가 신흥 입시명문고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흥 입시명문고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대학에서 그 교육에 맞게 미래 지향적인 입시선발기준을 갖는다고 한다면 입시명문고가 될 소지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창의력과 탐구력을 갖춘 인재양성 또는 7차 교육과정에 아주 합당한 교육을 시키는 모범적인 자립형 사립고가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해 볼만한 시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자립형 사립고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잘 지켜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립형 사립학교나 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 평준화의 시책과는 달리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학교들의 학생선발 내용을 보면 지식 정보화, 창의력, 탐구력을 갖춘 인재양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중학교 내신성적 55%에서 10% 이내, 토플은 550점 이상, 토익은 600점 이상 받아야 되고 전국단위 경시대회 입상자에 한해서 지원자격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 이전에 이미 상당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자립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준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립형 사립학교를 다른 불순한 의도로 하고자 하는 학교가 많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과는 달리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립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의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가능한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지방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등록금이나 기타 비용을 어느 정도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다음 15%는 장학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지역사회의 우수학생이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학생들을 그 학교에 넣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전북 전주 상산고를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추가지정한 사례에 대해서 고교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지 못

하고 자립형 사립고 지정의 기본취지를 흔들어서 놓았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경우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0년과 2001년에 24억의 재정보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도 갖고 있지 못하고 선정과정에서도 애초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생략된 이유,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취소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학교 성폭력 예방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6월 27일 학교 내 성희롱 예방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희롱이라는 것은 교육이 안 되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단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교사의 명예를…… 은폐해야지 왜 이렇게 드러내느냐 하는 식의 발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의 경우 상당히 축소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전담반 구성현황과 사이버 창구 설치 운영 추진현황을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고 외부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량정보교의 경우 가해교사는 수업을 계속하고 있고 청와대에 글을 올린 학생이 오히려 중징계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서비스 개방과 연관되어서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개방이라는 것은 일종의 교육철학의 문제이지 무역의 하나인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벌에 대한 문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李美卿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田溶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溶鶴 委員 몇 개월 만에 교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3일 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의대입학정원의 10% 감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즉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의대입학정원을 10% 감축한다면 2003학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의견대로 입학정원의 10%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전국 의과대학별로 일률적으로 10%를 감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의 교수확보율이라든지 병원의 운영 평가결과를 반영한다든지 해서 차등으로 적용할 것인지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은 의약분업 협상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사안입니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감축하는데 비해서 한의과대학의 신설을 추진하거나 한의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의학과 대학이나 한의학과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일부 대학에서 추진하는 대로 한의학대학을 신설해 줄 것인지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차 교육과정에 관해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심화·보충과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학기 기간 동안에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언어영역, 수리영역 등의 선택과목에 관한 지원상황을 각 학교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에 대한 취합이 이루어졌을 텐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 내년에 받게 될 심화·보충과정에서의 선택과목별 학생수와 인문·사회·자연계열의 지원상황, 그리고 학생들의 지원에 따른 교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번에 입법을 통해서 정비한 순회교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1학기 동안의 지원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실시할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운영상황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에 하반기 교섭합의가 이루어졌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田溶鶴 委員 거기서 보면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원자녀의 대학학비 보조수당의 신설, 교감직급보조비, 학급담당 수당, 보직교사 수당, 대학시간강사료 등의 인상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교감배치 등 38개 조항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합의를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합의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합의가 대단히 기형적인 합의인데다가 벌써 수년 동안 되풀이 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와의 이런 합의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재정범위 내에서 뒷받침도 되지 못하면서 수년간 공수표를 남발하는 격이 되어서 물론 이같은 합의도 나름대로 정책목표로서의 의미는 갖습니다마는 그러나 중국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같은 교섭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반영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총과 합의한 각종 수당의 인상 또한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2002년도 4월 기준으로 법정정원의 확보비율이 89%입니다. 그래서 현재 3만 100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모자라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도에 법정정원의 미달인원을 얼마로 예상하시는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7·20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르면 2003년까지 학교와 학급을 증·신설해서 총 2만 6488개의 학급을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원 법정정원의 증가가 약 3만 1000명인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과 2003년도에 2만 3600명의 교원을 충원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약 7400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 현재 부족인원 3만 1000명에다가 7400명을 합해서 약 3만 8400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수 외국대학원 유치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를 보면 외국우수대학원 유치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외국대학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설립인가대상으로 확정된 대학원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나 교사를 소유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도 학교법인 설립을 허가하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도 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대학원시장을 외국에 개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97년에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교육기관의 대외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우리나라에 외국의 학교법인이 분교를 설립하거나 학교를 설립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개방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학교법인이 우리나라에 전혀 학교를 설립하지 않는 이유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연구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있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연구는 없어도 이웃 일본에서 이것이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 상태로 외국대학원이나 대학이 들어오기는 어렵다,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프로그램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비롯한 몇 개 대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일단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田溶鶴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이에 우리 국내 학생들의 외국유학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학이 억제할 사안은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 적극 권장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유학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국제수지 적자규모만도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이같은 현상은 세계수준의 대학이 우리 국내 고등교육시장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여길지라도 자국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유학생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학을 개방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학문적으로나 교육의 내용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외국교육기관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을 우리 교육인적자원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와 관련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 나서서 우수대학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 제도개선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목적으로 밝힌 대학원교육의 질향상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내용, 방법상의 획기적 개선도모를 진실로 원한다면 국내대학에 발목을 잡혀서 결국 큰 실효성도 없는 정책만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내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하지 않고도 우수한 외국대학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대학원의 유치를 직접 독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선거에 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위원선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거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저는 봅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이나 특정 몇 몇 학부모에 의해서 좌우되는 실정에서 선거관련법의 정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제도와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위원선거의 타락과 불법을 막기 위해서 학부모에 의한 직선제를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자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기본목표이므로 비교육분야 출신 교육위원의 확대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체벌에 관한 문제, BK21 관련사항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田溶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祐呂 委員 한나라당의 黃祐呂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외국대학원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WTO체제에서 제3차산업 특히 의료·교육·법률 분야의 개방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개방 문제는 국가적으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지금 외국대학원 유치에 대한 원칙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국회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훌륭한 외국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외국대학원이라는 것은 결국 교수가 훌륭해야 되고 또 거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모여야 되고 또 월등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우수한 대학원이 형성되고 독특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훌륭한 외국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동남아라고 그럴까, 중국이라고 그럴까, 또 몽골이나 러시아까지 이러한 교육을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시야를 좀 넓히고 장기적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 교육기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제가 일본, 중국, 싱가포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국가적인 폐쇄성 때문에 대체로 실패로 돌아가고 있고 중국은 특히 미국이나 외국이 중국시장을 보고 자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싱가포르도 비슷한 양상으로 특히 영어권이기 때문에 분교형식으로 아주 수월하게 또 자체 교육기관이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 교육개방을 통해 대량으로 일반 교육기관이 들어와서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적절히 규제하고 우수한 대학원을 유치해서 발전시키려면 장대하고 체계적인 통찰력을 갖고 하셔야 되고 특별히 제가 이번에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시장개방의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많은 산업 연계성이 있습니다.

또는 제3의 세계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공부하려고 하는, 한국에서 공부해야 될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우수한 대학원들이 와서 학문의 장을 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으로 유치하시면 하나의 발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미에서 입장을 정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 걱정을 원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저로서는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나 하면 플라톤도 지적을 했지만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개인 적성의 파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도 행복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느냐 라는 것을 파악해서 육성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교육이요, 국가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국가위주로 국가가 국민을 부속품으로 여겨서 이렇게 배치하는 데만 관점을 두어도 안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배치했을 때…… 국민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아서 자기의 소질과 자기가 평생 그것을 해도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만 이 기본계획은 민주적이고 국민을 위한 계획이 되고 또 그것이 전체사회에서 조화가 될 때만이 이 계획은 가치가 있고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주의 사상이나 국가주의 사상에 흐르지 않기 위해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반드시 개인의 적성 파악에 굉장한 중점을 두고 거기에 큰 노력과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발표하신 것은 너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중점이 놓여져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외국의 교육과정을 보면 선생님들이 수시로 학생들에 대해서 그 소질과 장래에 대한 코멘트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존중이 되어서 다음 학교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학부모나 사회, 국가도 그 선생님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위와 존경을 부여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사실 그런 시절을 거쳤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것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또 그 의견이 무시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획일적인 교육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고 입시위주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불만이 쌓여서 결국은 학생들이 학교교육 또 나중에 취업에 이를 때까지도 자기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학생들 자신한테만 맡겨 둘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교육과정에서 흡수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전문적인 평가에 따라서 그 적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우리 교육에 포함되어야 되고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에는 이것이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축구에도 보면 멀티플레이어를 양산한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 학생에게 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법관이 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늘 제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까마는 그렇게 구체적인 직업도 직업이지만 너는 무엇을 잘하는 것 같다, 너는 어떤 부분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교육기관에서의 평가와 장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 전반과 하나의 인간이 그야말로 행복하게 평생을 국가라는 사회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

시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것을 발표하신 것이 영재교육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영재교육도 저희가 사실은 실패한 예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높은 IQ로 천재라는 칭송을 받고 동네사람들의 기대와 촉망을 한 몸에 모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영재라고 그러면서 부담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대만큼 우려도 됩니다.

저는 영재교육의 초점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영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그 학생의 재능 중 어떤 부분을 영재로서 인정해야 될 것이냐, 인간 자체를 영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 인간의 어떠한 소질을 높이 파악해야 되느냐, 이러한 영재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에 대한 것이 중요한데 좀 소홀해 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영재를 교육하는 교육과정과 교사가 확보되었느냐, 국민들에게 이 점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영재학원이라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거기에만 들어가면 영재인줄 알고, 부모들의 대리만족이라고 그럴까 자기 자식에 대한 확신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만족시켜 주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으로 영재교육을 할 때에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회와 국민에게 ‘아. 이런 것이 영재교육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국민의 호응이 따라가고 혼란과 무질서가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재교육예산에 대한 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는 5억 8000만 원, 부산에는 9억 1000만 원, 대구는 8억 정도, 인천은 9000만 원 광주가 2억, 대전은 1억, 울산 1억, 경기도는 2000만 원, 강원 3600만 원, 충북에 3800만 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간에 대단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런 예산이 공개될 때 각 지역에서 합리성을 어떻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것은 국

고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지방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黃祐呂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도교육청 예산입니다마는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의하면 영재교육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이 이렇게 하더라도 국가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원래 영재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영재교실이나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 단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은 없었던 것입니다. 시·도 단위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黃祐呂 委員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국가 전체적인 균형 있는 영재교육이 되겠느냐?

제가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말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체벌에 관한 혼란이 일어났는데 96년 11월 27일에는 체벌불허방침이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黃祐呂 委員 그리고 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7항, 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장 제31조 이런 데 보면 체벌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체벌에 관한 규정은 사실 훈시적·예시적 규정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이것이 체벌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교권의 상징인 것처럼 잘못 오도된 데에서…… 지금 세계 각국도 체벌을 허용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종교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립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우리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것과 같은 체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체벌은 국가가 앞서서 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나 학교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에 관한 것은 이야기 드릴 것이 너무 많은데 난이도가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을 초점으로 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강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黃祐呂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다 하시지 못한 金貞淑 위원님, 李在禎 위원님, 玄勝一 위원님, 李美卿 위원님, 田溶鶴 위원님, 李揆澤 위원님, 李在五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李美卿 委員 위원장님,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공청회개최의건이 미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尹榮卓 예.

○李美卿 委員 지금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도 그 대상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앞에 나가 보면 날마다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공청회가 그냥 미루어지는 것인지 언제쯤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오늘 의사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족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李美卿 委員 간사들 간에는 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委員長 尹榮卓 소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오전에 상정을 못했고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아직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榮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중요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일 빈도수가 많은 것이 외국대학원 유치문제와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관련되는 선거제도 두 가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더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러시면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학원 교육문제입니다. 우수 외국대학원을 유치해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큰 자극을 주겠다는 의도로 최근에 하나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까 玄勝一 위원님께서 “왜 사전에 이러한 것을 의논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안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드는 정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이 다 되어 가지고 함께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른 정책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좀 더 협의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李在禎 위원님, 李美卿 위원님, 田溶鶴 위원님, 玄勝一 위원님, 黃祐呂 위원님 등등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우려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째로 외국대학이 들어오는 것이 남발되어서 저질대학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수외국대학원유치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우수한 대학만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5, 6개 대학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한양대학, 연세대학 등등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이 현재까지는 대부분 다 우수한 대학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유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가지고 처음에는 질적 수준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하고 듀크대학하고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듀크대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 나라에서는 2년 이상 3년 되어야 석사를 주는데 우리는 1년만에 준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학기제를 시메스터제로 하느냐, 트라이메스터제로 하느냐, 쿼터제로 하느냐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1년반 정도로 해서 저쪽의 요구하고 이쪽의 요구를 맞추겠다 그런 뜻으로 이런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대학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학위제, 듀얼 디그리시스템 또는 조인트 디그리시스템 이런 공동학위제로 하든지 또는 단독으로 대학원이 들어와서 하든지 이 두 가지인데 현재 저희들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대부분이 공동학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학위제로 하면 외국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우선 한국의 땅값이 비싸서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국에 여러 가지 교육의 규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벗어나서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학교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시점에 외국대학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기존 대학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큰 자극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화초기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인력, 스킬드 맨파워 기능인력 양성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성숙된 산업사회가 오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대학졸업 정도의 엔지니어, 경영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제 정보산업 시대에 오면 연구개발요원이라든지 질 높은 전문직이라든지 사회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원의 질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어느 급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학원에 자극을 한번 주어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 두뇌한국 21 즉 BK 21사업을 해 가지고 대학원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BK 21사업은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 하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을 못 주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적인 면에서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만 명당 얼마 등 통계숫자는 자세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미국, 일본, 구라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현재 절실한 과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립대학에도 2000명이라는 증원을 해서 그런 대학원교육에 영향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우수 외국대학원을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것도 여기에 다 연관이 되고 어차피 WTO 시장개방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맞고 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필요나 시대적인 요청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貞淑 委員** 석사만 허용합니까, 박사도 허용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석사, 박사 다 허용하려고 합니다.

○**金貞淑 委員** 그러면 끝까지 여기서 다 해서 학위를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가령 조인트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공부하고 저기에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金貞淑 委員** 그런데 외국대학원이 지금 들어오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인트 프로그램보다도 단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부총리께서 노리고 계시는 자극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조인트 학위제도로 하면 섞여져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서로 구분도 안 되니까 만약 실시한다면 단독으로 해야하고, 또 하나 질의인데 기존에 있는 대학에다가 허용을 하실 방침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차피 외국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원 수준이 엄청 높아져야 돼요. 자극을 주는 것이나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차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허용을 한다면 단독학위제로 가야 되고 석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박사학위는 여기서 몇 학기를 하거나 종합시험까지 본다든지 하는 데까지만 하고 외국에 가서 끝내는 것으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학에다가 두어도 좋고 또 단독으로 들어와서 어떤 시설을 쓰거나 누가 준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령 일본같은 경우는 외국대학들 들어와서 그냥 하라고 땅도 주고 건물도 다 지어 줘요. 외국대학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도 얻는 효과가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오히려 유치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규제를 좀 느슨하게 풀어서라도 촉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양대학이다 서울대학이다 그런 데에만 주어서도 안 되고 단독으로 해 가지고 비교를 시켜야 돼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유치한 학위와 단독으로 와서 얼마만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비교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극을 주려면 그렇게 엄격하게 더해서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알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외국으로 나가는 엄청난 숫자의 학생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다소 흡수할 수 있는 힘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학원과 동등한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출할 대학이 많지 않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풀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으면 안 올 것입니다.

○金貞淑 委員 풀어 주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대학들과 경쟁을 시켜야 되지 기존에 있는 대학원 안에다 프로그램만 바꾸어서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또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센서티브한 문제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사람이 여기 올 때에는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리법인으로서 들어와서 과실을 송금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가령 미국에 가서도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3만 5000 불이라면……

○金貞淑 委員 한꺼번에 두 마리, 세 마리, 열 마리 토끼 다 못 잡아요. 아까 우리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그런데, 경쟁 높아져야 된다고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저도 찬동해요. 그런 의미에서 자극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크게 보시고, 와서 해 보고 그때 법을 강화해도 안 늦어요. 그때 가서 규제들을 더 바꾸어도 돼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田溶鶴 委員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우수 대학원을 유치해서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인다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북아 중심 비즈니스

스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들어가는데 외국 우수 대학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 교육에서 인문사회 계열은 모르지만 자연 계열 이공계 계열은 대학에 있는 어마어마한 시설이 뒷받침되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Post Doc까지 연결되고 할 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영종도에 영어로 강의하는 MBA대학을 들여온다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국내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도 있겠지만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우선 한 두 개라도 제대로 된 대학원을 유치해서 자리 잡도록 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잘 알겠습니다.

○黃祐呂 委員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심의에 관여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법률인데 여기에 슬그머니…… 규제를 다 풀고 제주도 안에서만 외국대학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발언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별도의 특별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서 부칙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교육부에서 이 점을 특별법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외국 대학이 들어왔을 때 한국대학의 역차별 문제 또 교육의 충격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 선출제도 문제는 金貞淑 위원님, 田溶鶴 위원님, 玄勝一 위원님 등 여러 분께서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 과거 몇 년 전에는 교육위원 선거를 할 때 기초의회에서 2명씩 복수로 추천하면 도의

회에서, 광역의회에서, 시·도의회에서 1명을 선출하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선출된 한 7명에서 15명의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니까 너댓명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시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선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인단을 조금 늘려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금품수수나 선거법 위반 문제는 상당히 없어졌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1일 선거를 하는 동안에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선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는 특정한 세력들, 교장들, 공무원들 또는 어떤 교직단체가 들어와서 자꾸 혼드니까 아예 직선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기된 문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선거활동을 너무 제한하기 때문에 이름도 간신히 알리는 정도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뽑을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입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위원회 의원입법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고, 또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전체로 결의를 하거나 한적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러 선거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도 지방자치선거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넣어 가지고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 쪽을 저는 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지금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하는 것은 누가 헌법소원만 내면 걸립니다. 위헌입니다. 자꾸 간선을 얘기하시는데 간선이 아니에요. 운영위원들한테 누가 선거 대신해 달라고 위임해 주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것 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金貞淑 委員** 그것은 위헌소송하면 금방 걸려요. 그때 그 법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옛날 제도가 부정부패가 많고 감옥 가는 사람

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합법성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뽑았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인데 그 자리에 갈 사람을 국민이 뽑은 지방자치 의원이 위임을 받아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당장 위헌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편의상 이렇게 가고 있는 것뿐인데 교육부총리께서 주민직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공청회라도 빨리빨리 해서 정부입법으로 내시라고요. 정부입법으로 내면 국회가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성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金貞淑 委員**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역사교과서 있잖아요?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장관님 개인의견이라도 듣고 싶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기 역사편찬위원장님 와 계시지요? 이것에 대한 토론을 나중에 한 번 더 하자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지금 「이겨려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하고 「살아 있는 한국사」하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검·인정교과서 제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관계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중 오는 29일 월요일에는 직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다음날인 30일에 있을 산하단체 업무보고 시 함께 업무보고를 듣기로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제3차 회의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참석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대학원 유치문제라든지 교육위원 선출문제, 직선이다 간선이다 하는 문제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시다마는 적어도 교육부……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마는 적어도 교육부의 정책은 그야말로 좀더 신중하게 해서 한번 결정되면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出席委員(14人)

權 哲 賢 金 貞 淑 金 花 中 朴 昌 達  
尹 榮 卓 李 揆 澤 李 美 卿 李 在 五  
李 在 禎 田 溶 鶴 鄭 夢 準 趙 富 英  
玄 勝 一 黃 祐 呂

○出張委員(2人)

金 敬 天 薛 勳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尙 元 鍾  
전 문 위 원 鄭 順 泳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 총 리 李 相 周  
차 관 金 信 福  
기획관리실장 李 基 雨  
인적자원정책국장 鄭 冀 五  
평생직업교육국장 趙 成 鍾  
대학지원국장 徐 南 洙  
공 보 관 金 撤  
감 사 관 金 洪 鎭  
국제교육정보화관 金 正 基  
교원정책심의관 朴 景 載  
비 서 실 장 金 東 玉  
총 무 과 장 李 鍾 洵  
학교정책기획팀장 李 英 萬

○其他參席者

학술원사무국장 鄭 永 宣  
국사편찬위원장 李 成 茂

교원징계재심위원장 鄭 相 煥  
국제교육진흥원장 董 善 浩  
국립특수교육원장 朴 慶 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丁 海 昌  
대 학 원 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金 麗 壽  
대한교원공제회장 趙 宣 濟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金 相 權  
한국학술진흥재단기획조정실장 李 鍾 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위원 金 炯 根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徐 世 鉉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車 炫 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金 榮 燦  
서울대학교병원장 朴 容 眩  
경북대학교병원장 全 琇 漢  
전남대학교병원장 黃 泰 周  
부산대학교병원장 梁 雄 錫  
충남대학교병원장 李 俊 揆

【報告事項】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鄭夢準	保健福祉	教 育	비교섭단체

○議案回附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

(7월23일 현승일·장성민·황승민·김택기·김태홍·오세훈·김홍신·윤경식·권기술·박창달·정병국·서상섭·김성조·안상수·심재권·박양수·김화중·김형오·이원형·김원웅·이해봉·김용학·고홍길 의원 발의)

7월25일 회부됨.